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의 예비 시험장에서 시험 진행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13-2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①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13-2판 기준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상기도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폐렴 진행이 적은 특성으로 무증상 및 경증의 비율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미터)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상의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⑤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응급(분만)환자, 입원(소)환자 등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 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주사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상기 치료 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가능합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를 조사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가능

- 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 증상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
- 무증상일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